

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

수 신 : 리딩플러스대부 귀중

각서인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48-5, 6, 6 번지에 구리시 인창동 다세대주택 신축사업(이하 “본건 사업”이라 함)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(이하 “대주”)와 임 (이하 “차주”) 등과 사이에 체결되는 금 팔억삼천만원(W830,000,000)의 대출약정(이하 “대출약정”이라 하며, 추후 수정, 변경 또는 보충된 것을 포함)과 관련하여,

대출약정 각 조항의 법률적, 사실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서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진정한 의사로서 위 대출약정 및 기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합니다.

각서인은 본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본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. 본 포기각서에 사용된 모든 용어는,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, 대출약정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. 문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본 포기각서상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, 모든 계약, 약정 및 문서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된 것을 포함하며, 본 포기각서에서 달리 규율하지 아니하는 한 본 포기각서에서 언급된 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합니다.

1.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, 귀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본건 사업부지 및 본건 시설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함한 본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각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(이하 “시행권”)를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하는 자(이하 총칭하여 “대체시행자”)에게 이전할 것을 각서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위와 같이 귀사의 서면 통지가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 없이 본 포기각서로써 각서인은 시행권을 조건 없이 이전할 것입니다. 각서인은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합의나 서면이 없이도, 그 시행권 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, 각서인은 이러한 시행권의 양도에 필요한 통지, 신청 기타 각종 행위를 대리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고, 이러한 대리권의 수여 및 위임은 취소 또는 철회가 불가능

7. 본 포기각서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, 본 포기각서에 의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8. 본 포기각서 및 첨부 서류에 관한 간인은 “법무법인(유한) 민”의 천공 또는 간인으로 대체하기로 한다.

첨부: 1.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1부
2.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1부

2020년 [3]월 []일

위 각서인

임:

(인) 

서울 노원구 중계로